

— 구미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2월 22일

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윤 영 섭

나. 제안이유

-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“무인민원증명 발급기”를 통한 민원접수·처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

다. 주요내용

- 제5조의2(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) :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(신설)
- 제8조③항 : 직장새마을금고, 직원복지회에서 증지 판매 계약 신청시 “타에 우선하여” 계약사항은 삭제
- 제11조②항 : 판매인은 일정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와 성실히 판매(삭제)
- 제14조 : 판매인 계약 취소 조항(삭제)

라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
- 포항시수입증지조례 외 2건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